

“성별분리통계” 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오피스텔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일대가 ‘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면한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오피스텔 관련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허용용도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때는 충분한 기반시설 여건 확보(최소폭 20m)를 전제하고 일정규모(3,000㎡)이하 정도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공부상 점도요건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물리적인 점도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참조)

귀하께서 민원서류상 인용하신 일조기준을 위한 도로의 너비산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관련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타 건축관련 사항은 허가권자인 자치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8호관련 유권해석 알림(도시계획과-2426, '17.2.16)

서울특별시장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03/06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474 ()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832 / 21zu@seoul.go.kr / 비공개(6)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8호 관련 유권해석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8호와 관련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오피스텔(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인 것)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결과(요약)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해석 사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오피스텔 관련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때는 충분한 기반시설 여건 확보(ex. 보조간선도로 이상인 서울특별시의도의 최소폭 20m)를 전제하고 일정규모(3,000㎡) 이하 정도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공부상 접도요건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물리적인 접조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11860호; `16.8.12)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02/16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시행 도시계획과-2426 ()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4 /전송 2133-0736 / kkon9@seoul.go.kr / 비공개(5)